

1. 개정 이유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승인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를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7조제4항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승인서	
		사업장 소재지		발급일자	발급번호
	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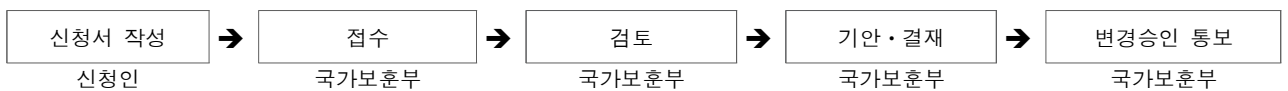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 1부(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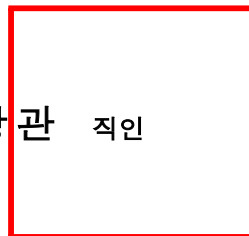
수익사업 승인서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5. 수익사업 사업장 소재지:
6. 승인내용:
7. 승인 유효기간: . . . ~ . . . (3년간)
8. 수익계약대상단체 여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변경사항	①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② [] 수익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설의 변경		
	③ [] 수익사업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		
변경내용	변경 예정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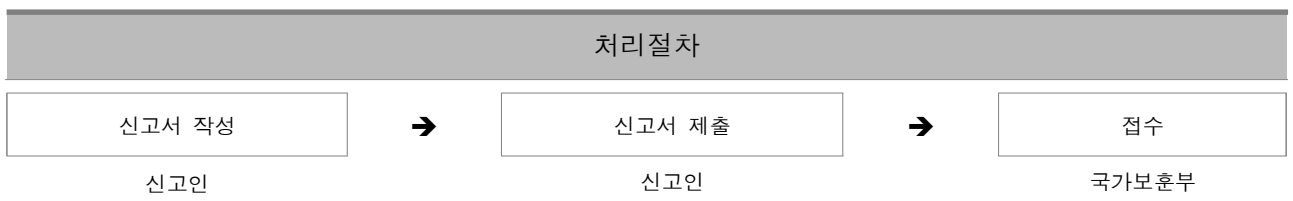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 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 로 한정하며,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가보훈부	→	검토 국가보훈부	→	기안·결재 국가보훈부	→	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통보 국가보훈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 ③ (생 략)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u>별지 제7호서식</u> 에 따른 수익사업 <u>승인 유효기간 연장서</u> 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④ ----- ----- ----- ----- ----- ----- <u>별지 제4호서식</u> ----- ----- <u>승인서</u>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